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구직자취업촉진법’)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23.

###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7조 및 제28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
장O은 (98.12.29.)	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54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'24.12.2. 1회차 취업성공수당 500,000원을 수령하였으나, '24.10.11.부터 근속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(부산창년 기쁨두배통장)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금 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('24.5.20.~11.19.)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지급하지 않음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 반환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 6. 23. ~ 2026. 7. 7.(15일간)
5. 의견제출방법: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(부산고용센터 2층 국민취업지원과) 또는 팩스(051-719-4513)
6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김지원(Tel. 051-860-2136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